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6일, 이창열 의원
- 회부일자: 2025년 4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4월 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LPG 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지원 대상 선정(안 제5조)
- 지원 사업 위탁근거 마련 및 협약체결(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3. 6.
- 회부일자 : 2025. 4. 1.
- 상정일자 : 2024. 4. 7.

2. 제안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LPG 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지원 대상 선정(안 제5조)
- 지원 사업 위탁근거 마련 및 협약체결(안 제6조~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서 군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군수의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지원)에서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지원 대상 선정)에서 사업가능성, 사업비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사업위탁)에서 LPG 공급시설의 설치와 배관 공급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도시 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지자체 사무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 · 군도(郡道) · 구도(區道)의 신설 · 개선 · 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 략)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 13. (생략)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도 또는 시·군·구의 LP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
6. "소비자"란 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서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7. "검수"란 공사의 사업기관이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불임 참고 자료

□ 영월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2024.10.11.) 외 19건

(관내 4곳: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월군, 홍천군)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400
----------	-----

발의 연월일: 2025년 3월 6일
발의자: 이창열 의원
찬성자: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관련)
- 나. LPG 공급시설 설치비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관련)
- 다. 사업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 선정(안 제5조관련)
- 라. 지원사업 위탁근거 마련 및 협약체결(안 제6조~제7조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02. 24. ~ 02. 28.(의회사무과-873),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집행부 의견(경제과)	검토결과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선사업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 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대한 의견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u>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법인 등</u> 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 제6조 대한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업(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3조의 군수가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위탁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원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됨. 또한, 제1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는 조례안 제3조의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2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용) 다만, 집행부 의견 중 '사업자 단체, 법인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업자단체' 정의를 보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할 결합체'라 정의하고 있어 조례상 '사업자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단체'로 규정함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개선사업”이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선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3. 18.]

비용추계서 (제4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4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1,700세대
※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 및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행(예정)지역
을 제외한 총 세대의 20%
- 세대별 지원금액 : 최대 2,500천원

나. 추계 결과

- 소요 예산액 : 4,250,000천원 ($2,500\text{천원} \times 1,700\text{세대}$)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과장 전해순
연락처	(033) 330 - 2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이후 (2029년 이후)	계
세 입	—	—	—	—	—	—
세 출	150,000	500,000	500,000	500,000	2,600,000	4,250,000
LG 저장탱크 지원사업	150,000	500,000	500,000	500,000	2,600,000	4,250,000
재원 조달	150,000	500,000	500,000	500,000	2,600,000	4,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50,000	500,000	500,000	500,000	2,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